

의안번호	제 344 호
의년 월 결일	1996. 5. 28. (제 44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1996. 4. 9.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제출년월일 : '96. 4. 9

제출자 : 고성군수

의안	
번호	344

1. 제정사유

-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안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

- 최근 공시지가에 의함
- 점용료 600원 미만, 면적 1평미만의 단수는 계상 않음

나. 각종 공사 및 그외의 유관기관 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

- 재해용급복구를 위한 경우 외 7가지 경우

다. 전년대비 연간 점용료 증가에 따른 조정 (제4조)

-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조정

라.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 회계년도별 구분 징수
- 기타 : 당해년도 5월내 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발췌(소하천 정비법 제22조)

나. 도치수 13930 - 825 ('95. 7. 31) 호의 소하천 정비법 시행관련 후속조치 지도계획시달 공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 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등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 4 조(점용료동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동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동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동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동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끝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점용료동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동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동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동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동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동에 있어서 그 점용료동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징수) ①점용료동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동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동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동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제 8 조(장수의 위임) 군수는 첨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옵,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동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 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p> <p>다. 광업 (굴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흙과 돌,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동 매설을 위한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p> <p>연액 m^2/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p> <p>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p>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 ³ - 0.5m ³ / sec까지 연액 10,000원 0.5m ³ / sec 증가시마다 10,000원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나목의 1/4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금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남 부 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 - 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 - 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 - 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 - 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 - 500/100)×5/1000}】